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권영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74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권영세의원 대표발의(제2200874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시설물 관리주체의 책임 강화(안 제3조 등)	2
나.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안 제12조)	5
다. 시설물 긴급안전조치 대상 확대(안 제23조)	11
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조치 대상 확대(안 제24조제3호 신설) ·	14
마. 벌칙 및 과태료 상향 조정(안 제63조 등)	17

I. 권영세의원 대표발의(제2200874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권영세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6. 24.

다. 회 부 일 : 2024. 6. 2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물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시설물을 종별(1종에서 3종까지)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점검, 진단 및 보수·보강 등의 관리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설물과 관련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노후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6조, 제12조, 제23조 및 제24조 등).

3. 검토의견

가. 시설물 관리주체 책임 강화(안 제3조 등)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략)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② 관리주체는 매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수시 점검 및 보수 등을 통한 상시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설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
1. ~ 5. (생략)	-----제5호 및 제6호의-----.
<u><신설></u>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략)	6. 시설물의 상시관리를 위한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
	③ ~ ⑨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시설물의 관리주체¹⁾로 하여금 매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고, 시설물에 대한 수시 점검 및 보수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사항을 국가 등의 책무 규정에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2조²⁾ 및 제7조³⁾에 따르면 ‘시설물’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의미하고 있는데,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3.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2023년 4월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⁴⁾ 등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이에 따른 국민의 시설물 안전 강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개정안과 같이 교량, 터널 등과 같은 시설물의 수시 점검 및 보수 등에 관한 관리주체의 책무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주체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시설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에서는 시설물의 상시관리를 위한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 제6조⁵⁾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안 제3조에서 추가하려는 관리주체의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관한 책무가 실제 정책에 반영·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제3조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됨.

4) 2023년 4월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왕복 6차로, 총연장 108m)의 보행로 구간 일부가 붕괴되어 사망자 1명과 부상자 1명이 발생한 사고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나.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u>제1종시설물에</u>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 ----- <u>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u> ----- ----- -----.
② (생략)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주체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u>제2종시설물이나 제3종시설물에</u>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u>제12조제4항에</u> 따른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	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u>제12조제5항에</u> ----- ----- -----

현행	개정안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물에 제1종시설물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을 추가하고,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제2종시설물이나 제3종시설물 중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⁶⁾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그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안전등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1조에 따라 제출된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의 확인 등 시설물의 보수·보강이 완료되어 등급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한 시설물의 상태변화 등 안전등급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

<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2조 관련) >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1.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2.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3.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4.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5.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안전등급⁷⁾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12조제1항⁸⁾⁹⁾에서는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등 ‘제1종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등 ‘제2종시설물’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인 ‘제3종시설물’¹⁰⁾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이 아닌 현행법 제11조¹¹⁾에

7) 국토교통부는 향후 시행령 마련 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 중 C등급 이하 제2종 또는 제3종 노후시설물은 30년 경과 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D,E등급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위 중 시설물에 준한 점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3.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따른 정기적 ‘안전점검’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

구분	안전점검		정기적 정밀안전진단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점검대상	제1·2·3종시설물	제1·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 다만,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 정밀안전점검 실시 가능¹²⁾

이와 같이 제1종시설물에 대해서만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제1종시설물이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교량 및 다목적 댐 등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관리 부실로 인한 붕괴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그 인적·물적 피해가 대규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런데,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등 제2종시설물¹³⁾의

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1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경우 그 규모 및 사용 대상을 고려해 볼 때, 노후화로 인한 붕괴 사고 등의 발생 시 그 인적·물적 피해가 제1종시설물과 같이 대규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제3종시설물의 경우에도 비록 소규모 시설물로 분류되어 있으나, 동일하게 안전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경우 파손, 붕괴 등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제1종시설물에 대해서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시설물에 대한 국가 등 관리주체의 책임 및 안전성 관리 강화 필요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임.

이에 개정안은 제1종시설물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 중 안전점검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3.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시설물 관리 부실로 인한 대규모 사고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다. 시설물 긴급안전조치 대상 확대(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3조(긴급안전조치)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긴급안전조치) ① ----- -----통보받거나 시설물이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시설물의 사용제한·금지 및 철거 등 긴급안전조치 대상에 해당 시설물이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¹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

<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2조 관련) >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1.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2.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3.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4.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5.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안전등급¹⁵⁾으로 지정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23조¹⁶⁾에서는 제22조¹⁷⁾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등(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로부터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관리주체가 직접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주체에게 이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5) 국토교통부는 향후 시행령 마련 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 중 D,E등급에 해당되는 시설물에 대해 신속한 보수·보강, 긴급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에서 시설물기초의 세굴(洗掘), 부등침하(不等沈下)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외에 해당 시설물에서 교량 난간의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이하 "중대한결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안 제12조에서 시설물 관리 부실로 인한 대규모 사고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 등을 추가·확대하고 있음에 따라 그 내용을 현행법 제23조에 따른 긴급안전조치 대상에 추가 반영하려는 것으로,

정밀안전진단과 긴급안전조치 조문 내용의 법적 연계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물적·재산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조치 대상 확대(안 제24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① 관리주체는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결합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① ---- -----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u> ----- ----- -----.
<신설>	1.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신설>	2.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신설>	3.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이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대상에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이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¹⁸⁾으로 지정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18) 국토교통부는 향후 시행령 마련 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 중 D,E등급에 해당되는 시설물에 대해 신속한 보수·보강, 긴급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현행법 제24조는 시설물 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의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13조제6항¹⁹⁾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거나 제23조 제1항²⁰⁾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개정안은 안 제3조, 제6조 및 제12조 등에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등에 대한 국가 등 관리주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해당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강화를 위해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현행법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대상에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시설물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시설물의 안전 관리 및 사전 조치 강화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한편, 개정안에서는 안 제12조에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 외에 정밀안전점검²¹⁾ 결과에 따른 시설물도 추가하고 있는데,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도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을 지정²²⁾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2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6.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점검의 종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2.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2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때, 제3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때에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마. 벌칙 및 과태료 상향 조정(안 제63조 등)

현행	개정안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3조(벌칙) ① ----- ----- -----.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 ----- ----- -----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벌칙) ① ----- -----3년----- -----3천만원-----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삭제>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삭제>
7.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	<삭제>

현행	개정안
8. <u>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u>	<삭 제>
9. <u>제30조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자와 명의대여 등을 받은 자</u>	<삭 제>
10. <u>제31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u>	<삭 제>
11. <u>제61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u> <신 설>	<삭 제>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1. <u>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u> 2. <u>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u> 3. <u>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u> 4. <u>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u> 5. <u>제30조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자와 명의대여 등을 받은 자</u> 6. <u>제31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u>

현행	개정안
② (생략)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2천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생략) <u><신설></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1천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u><신설></u> 2의2. (생략) 3. ~ 6. (생략)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u><신설></u> <u><신설></u>	<u>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u> 7. 제61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7조(과태료) ① ----- -----<u>3천만원</u>----- -----. 1.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 ----- 2. (현행과 같음)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 ----- -----<u>2천만원</u>-----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의3. (현행 제2호의2와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u><삭제></u> 8.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1천만원</u> 이하의 과태

현행	개정안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6. (생략) 7.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 -----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5. 6.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	개정안
8. ~ 15. (생략)	8. ~ 15. (현행과 같음)
16.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삭제>
17. · 18. (생략)	17. · 18. (현행과 같음)
1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삭제>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개정안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미이행 하는 경우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 및 점검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정확성, 실효성 제고를 통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임.

< 벌칙 및 과태료 상향 조정(안) 주요 내용 >

구 분	주요 내용	상향 조정(안)
벌칙	다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자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 서류 열람 또는 교부 요청에 불응한 자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자료 미제출자	500만원 ⇨ 1,000만원
	· 시정요청에 불응한 자 ·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 미제출자 ·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미제출자	500만원 ⇨ 2,000만원
	· 성능평가를 미 실시한 자	1,000만원 ⇨ 3,000만원
	· 내진성능평가를 미 실시한 자 · 안전점검을 미 실시한 자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미통보 또는 미제출자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등	1,000만원 ⇨ 2,000만원
	· 정밀안전진단을 미 실시한 자 · 긴급안전점검을 미 실시한 자	2,000만원 ⇨ 3,000만원

문 의 처

02)6788-5591